

#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5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. . 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며, 특히 최근 홍제동 화재 사고에서 보듯이 야간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로 긴급재해 발생시 구조차량의 현장접근이 어려워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이면도로의 주차분쟁 및 주차난 해소에 적극 임하고자
-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내집안주차장 또는 이웃간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으로 통일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현행 용자 또는 보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방법을 보조금으로 통일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(안 제2조 내지 제7조).
- 나.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중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현행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 외에 내집안(이웃간 공동)주차장 설치의 보조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(안 제2조제2항).
- 다.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이웃간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포함함 (안 제3조제1항제5호).

## 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
-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
- 안산시주차장조례 제11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

- 2001. 제1회 추경예산 확보 예정
  - 소요예산액 ----- 90,000천 원
  - 1,500,000원 x 60개소 : 90,000천 원

사전(입법)예고 : 2001. 3. 16 ~ 3. 26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#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금액” 다음에 “및 제3조제1항제5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”을 삽입 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(다세대)주택의 대문,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

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제3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금은 당해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4조의 조명중 “또는 용자의”을 삭제하고, 동조의 본문중 “또는 용자를”을 삭제하며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(다세대)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쪽주택 건축물의 소유자

제5조의 조명중 “또는 용자의”를 삭제하고, 동조제1항중 “또는 용자금” 및 “또는 내집안주차장 설치자금 용자신청서(별지 제2호서식) 1부”를 각각 삭제하며, 동조제2항중 “30%이내”를 “80퍼센트이내”로 하고,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 (용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)를 삭제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 (보조금의 반환)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조금을 그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 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안산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조명 “보조 및 융자”를 “보조”로 하고, 동조제1항중 “보조 또는 융자를”을 “보조를”로, “보조하거나 융자할”을 “보조할”로 하며, 동조제2항중 “보조 또는 융자의”를 “보조의”로 하고, “및 융자금의 상환”을 삭제한다.

소관 실·과		교통종합민원실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통기획담당 신효승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영철 (행정 2951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세입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 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<u>&lt;삽입&gt;</u> 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.</p>	<p>제2조 (세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및 제3조 제1항 제5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----- -----</p>
<p>제3조 (세출) ①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 부를 보조 또는 융자</p> <p>② ~ ③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3조 (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(다세대)주택 의 대문, 담장을 개조하거나 이웃간 경계담 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3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 계로부터의 전입된 수입금은 당해 사업을 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</p>
<p>제4조 (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)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 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 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4조 (----- <u>&lt;삭제&gt;</u> ----- ----- <u>&lt;삭제&gt;</u> 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(다세대)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 치하고자 하는 양쪽주택 건축물의 소유자</p>

## 신·구조문 대비표